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	2023. . .	
연월일	(제 회)	

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O O O (법무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전

1. 의결주문

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공무원보수규정」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봉급이 1.7퍼센트 인상·조정됨에 따라 이를 검사의 봉급에 반영하는 한편,

「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으로 법관의 재판수당이 조정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검사의 수사지도수당을 조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2. 00. ~ 2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
음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월 20만원”을 “월 25만원”으로, “월 15만원”을 “월 20만원”으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사지도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사지도수당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봉급 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)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.

② 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봉급을 지급한다.

[별표 2]

검사의 봉급표(제7조 관련)

(월지급액, 단위: 원)

직명	호봉	봉급액
검찰총장		8,802,700
검찰총장 외의 검사	17	8,789,800
	16	8,773,000
	15	8,275,200
	14	7,779,900
	13	7,335,700
	12	6,960,800
	11	6,779,900
	10	6,567,300
	9	6,211,900
	8	5,788,500
	7	5,423,400
	6	5,080,600
	5	4,750,000
	4	4,417,100
	3	4,095,500
	2	3,774,400
	1	3,349,800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수사지도수당) ① 검사에게 는 수사지도수당을 지급하되, 그 금액은 검찰총장과 법조경력 30년 이상의 검사에게는 월 40 만원 이하로, 법조경력 20년 이 상의 검사에게는 <u>월 20만원</u> 이 하로,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검 사에게는 <u>월 15만원</u> 이하로, 법 조경력 10년 미만인 검사에게는 월 10만원 이하로 한다.	제11조(수사지도수당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월 25만원</u> ----- ----- ----- <u>월 20만원</u> ----- ----- -----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법무부 검찰과	
연 락 처	(02) 2110 - 4213